FIRSTVILL

천안 부성지구 우남퍼스트빌 입주자모집공고

청약Home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 관련 안내사항
- 부성지구 우남퍼스트빌은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사이버 모델하우스(buseong.firstvill.co.kr)와 견본주택 관람을 병행할 예정입니다.
-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항
  ※ 견본주택 관람시간과 관람가능일은 당사 홈페이지(buseong.firstvill.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향후 방문 예약방식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방문예약방식에 대한 사항은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 당첨자의 견본주택 방문 시 입장은 당첨자 본인 1인만 입장 가능합니다. (동반자 동행 불가 / 대리인 위임 시 대리인 1인만 입장 가능)
- 견본주택 방문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마스크 미착용, 손 소독제, 비접촉 체온계 등 예방 절차에 불응할 경우　※ 열화상 카메라 또는 체온계 측정을 통한 체온 37.5도가 넘을 경우
  ※ 자가격리 대상자, 의심자 등 역학적 연관성이 있을 경우　※ 기타 견본주택 운영 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상황 및 정부 정책에 따라 당첨자의 견본주택 관람, 당첨자 서류제출 및 공급계약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개별통보 할 예정입니다.

■ 부성지구 우남퍼스트빌 분양상담전화(1588-8034)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 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기사항증명서 및 소득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2.02.28.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2.09.16.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임)
■ 해당 주택건설지역(천안시)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자격에서 제외됩니다.(무주택 세대 또는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만 1순위 청약 가능)
■ 해당 주택건설지역(천안시)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조정대상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자격이 제외되며,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분은 1순위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 본 아파트는 전체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어 비확장형 세대는 공급하지 않으므로, 당사 홈페이지 및 홍보물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1항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하신 분도 청약 1순위 자격이 부여되나 1순위 가점제 청약은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민간 사전청약,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가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단, 동일단지 내 1인이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각 1건씩 청약가능하며,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시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처리 함)

구 분	대 상(주택 소유 구분)	1순위 청약 제한 대상	가점제 청약 제한 대상
1순위 청약 자격 대상자	무주택자, 1주택자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전 지역 해당, 모든 청약 대상자) • 2주택 (분양권 등 포함) 이상을 소유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과거 당첨으로 재당첨 제한 기간에 해당하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 청약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가점제 대상자	무주택자		
추첨제 대상자	1주택자 (처분조건)		
1순위 청약 제한 대상자	2주택자		

■ 본 아파트는 수도권 외 비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7년간 적용받게 되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본 아파트 청약이 불가합니다.(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당첨된 주택의 구분	적용기간(당첨일로부터)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제1항제7호)	7년간

■ '20.04.16 이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하여 입주자를 모집한 경우, 재당첨 제한 적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을 따르므로 과거 당첨된 주택의 재당첨 제한 기간은 당첨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 또는 청약홈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메뉴를 통해 개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9.16.)현재 천안시 및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동일순위 신청자 중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천안시에 1년 이상 거주자가(2021.09.16. 이전부터 계속 거주) 우선합니다.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이상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와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 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 등을 포함하며,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단, 분양권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합니다.)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청약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필요 (6개월 이상, 예치금) ※ 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불필요	필요 (6개월 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6개월 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24개월 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24개월 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24개월 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세대주 요건	–	–	–	필요	필요	필요	–
소득 또는 자산 기준	–	–	적용	–	적용	–	–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 기간이 24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구분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일반공급 1순위 해당지역 (천안시 1년 이상 거주자)	일반공급 1순위 기타지역 (천안시 1년 미만 거주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거주자)	2순위	당첨자 발표	당첨자 서류제출	계약 체결
일정	2022.09.26.(월)	2022.09.27.(화)	2022.09.28.(수)	2022.09.29.(목)	2022.10.07.(금)	2022.10.08.(토) ~ 2022.10.13.(목)	2022.10.18.(화) ~ 2022.10.20.(목)
방법	인터넷 청약 (09:00 ~ 17:30)	인터넷 청약 (09:00 ~ 17:30)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방문접수 (10:00 ~ 16:00)	
장소	• 사업주체 견본주택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당사 견본주택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215-6 • 대상자 : 당첨자	

※ 예비입주자 동·호 추첨 및 계약체결 일정은 사업주체 홈페이지(buseong.firstvill.co.kr)를 통해 안내 예정이며, 개별 통지는 하지 않으니 홈페이지를 통해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견본주택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합니다. (단, 코로나19로 인해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신청한 주택의 신청 취소는 신청당일 청약신청 마감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접수 종료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의 경우 예비 순번에 따라 서류접수 및 추첨 계약 기간 등이 상이하며, 해당 기간 내 서류 접수 및 추첨 미 참여 시 예비입주자의 지위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2022.02.28. 시행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충청남도 천안시 주택과 – 37747호(2022.09.15)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부대동 761 (부성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 A2블록)
■ 공급규모 및 내역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20층 6개동, 총 316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32세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30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66세대,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8세대, 생애최초 33세대 포함]
■ 입주시기 : 2024년 03월 예정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 ㎡, 세대)

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주거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세대별 계약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 공급세대수	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최하층 우선 배정 세대
					세대별 공급면적			그 밖의 공용면적		합계			특별공급								
					주거전용	주거공용	소계	기타공용	지하주차장				계	일반(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	생애최초			
민영주택	2022000640	01	84.9390A	84A	84.9390	27.0692	112.0082	5.4424	46.6145	164.0651	49.0798	182	97	18	18	37	5	19		85	10
		02	84.9679B	84B	84.9679	25.9761	110.9440	5.4443	46.6304	163.0187	49.0965	76	41	7	7	17	2	8		35	4
		03	84.9913C	84C	84.9913	26.6282	111.6195	5.4459	46.6432	163.7086	49.1101	58	31	7	5	12	1	6		27	3
합 계												316	169	32	30	66	8	33		147	17

※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4자리까지 표기하여 합계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원, 부가가치세 없음)

약식표기	주택형	동별(라인별)	공급세대수	층구분	해당세대수	분양금액 대지비	분양금액 건축비	분양금액 계	계약금(10%) 계약시	중도금(60%) 1회(15%) 2023.01.30.	2회(15%) 2023.04.28.	3회(15%) 2023.07.28.	4회(15%) 2023.11.30.	잔금(30%) 입주지정일
84A	84.9390A	101동 1호, 2호 103동 1호, 2호 104동 1호, 2호 105동 1호, 2호 106동 1호, 2호	182	1층	5	119,660,964	252,339,036	372,000,000	37,200,000	55,800,000	55,800,000	55,800,000	55,800,000	111,600,000
				2층	7	125,451,011	264,548,989	390,000,000	39,000,000	58,500,000	58,500,000	58,500,000	58,500,000	117,000,000
				3층	10	129,954,380	274,045,620	404,000,000	40,400,000	60,600,000	60,600,000	60,600,000	60,600,000	121,200,000
				4층	10	133,171,073	280,828,927	414,000,000	41,400,000	62,100,000	62,100,000	62,100,000	62,100,000	124,200,000
				5층~6층	20	135,101,089	284,898,911	420,000,000	42,000,000	63,000,000	63,000,000	63,000,000	63,000,000	126,000,000
				7층~14층	80	137,031,104	288,968,896	426,000,000	42,600,000	63,900,000	63,900,000	63,900,000	63,900,000	127,800,000
				15층~20층	50	137,996,112	291,003,888	429,000,000	42,900,000	64,350,000	64,350,000	64,350,000	64,350,000	128,700,000
84B	84.9679B	101동 3호, 4호 102동 2호, 3호	76	1층	2	112,855,305	236,144,695	349,000,000	34,900,000	52,350,000	52,350,000	52,350,000	52,350,000	104,700,000
				2층	2	118,643,586	248,256,414	366,900,000	36,690,000	55,035,000	55,035,000	55,035,000	55,035,000	110,070,000
				3층	4	123,203,070	257,796,930	381,000,000	38,100,000	57,150,000	57,150,000	57,150,000	57,150,000	114,300,000
				4층	4	126,436,746	264,563,254	391,000,000	39,100,000	58,650,000	58,650,000	58,650,000	58,650,000	117,300,000
				5층~6층	8	128,376,952	268,623,048	397,000,000	39,700,000	59,550,000	59,550,000	59,550,000	59,550,000	119,100,000
				7층~14층	32	130,446,505	272,953,495	403,400,000	40,340,000	60,510,000	60,510,000	60,510,000	60,510,000	121,020,000
				15층~20층	24	131,416,608	274,983,392	406,400,000	40,640,000	60,960,000	60,960,000	60,960,000	60,960,000	121,920,000
84C	84.9913C	101동 5호 102동 1호, 4호	58	1층	3	119,858,008	251,941,992	371,800,000	37,180,000	55,770,000	55,770,000	55,770,000	55,770,000	111,540,000
				2층	3	125,725,183	264,274,817	390,000,000	39,000,000	58,500,000	58,500,000	58,500,000	58,500,000	117,000,000
				3층	3	130,238,395	273,761,605	404,000,000	40,400,000	60,600,000	60,600,000	60,600,000	60,600,000	121,200,000
				4층	3	133,462,117	280,537,883	414,000,000	41,400,000	62,100,000	62,100,000	62,100,000	62,100,000	124,200,000
				5층~6층	6	135,396,351	284,603,649	420,000,000	42,000,000	63,000,000	63,000,000	63,000,000	63,000,000	126,000,000
				7층~14층	24	137,330,584	288,669,416	426,000,000	42,600,000	63,900,000	63,900,000	63,900,000	63,900,000	127,800,000
				15층~20층	16	138,297,701	290,702,299	429,000,000	42,900,000	64,350,000	64,350,000	64,350,000	64,350,000	128,700,000

※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 ×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주택형의 구분은 입주자 모집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카달로그, 홍보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될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통사항
• 2009.04.0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기준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여 청약신청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고분양가관리지역에서 건설되는 주택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고분양가심사위원회가 의결한 분양금액 총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주택형별, 층별 등에 따라 차등을 두어 분양금액을 책정하였습니다.
•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이전등기비용, 취득세가 미포함 되어 있으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발코니 확장비용, 시스템 에어컨 옵션 공사비용, 플러스옵션 비용 등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며, 플러스옵션 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단, 계약체결 일정은 추후 통보 예정입니다.)
•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지하주차장, 관리실,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실, 전기실 등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타공용면적 등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전체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어 비확장형 세대는 공급하지 않으므로, 당사 홈페이지 및 홍보물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마이너스 옵션 품목이 포함된 금액이며, 마이너스 옵션 품목은 분양계약자가 선택 계약하는 사항입니다.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로 산정하며 그 외 면적은 중심선 치수로 산정하며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별 전용면적, 공급면적,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난방방식은 각 세대별 가스보일러에 의한 개별난방이 적용될 예정이며,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벽식 구조입니다.
• 공동주택 세대별 대지지분은 전체 연면적 중 공동주택의 연면적 비율에 따라 산출된 공동주택 총 대지지분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거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대지경계 및 면적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 시 대지경계 및 면적 확정에 대하여 입주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가에 계산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관련 조세(종합토지세)는 추후 부과되는 실 과세금액을 입주자 잔금 납부시 납부하여야 합니다.(단, 종합토지세는 분리과세 기준)
• 근린생활시설과 공동주택은 하나의 단지로 복리시설과 공동주택(아파트)간 대지경계(구획)가 없는 공유토지입니다.
• 공급면적 및 대지의 대지지분은 공부정리절차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 등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는 확장형 기준 84A, 84B 주택형이 설치되어 있으며, 설치되지 않은 그 밖의 주택형 및 타입은 CG와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계약 전에 세대내부, 가구배치, 실면적 등 견본주택 설치 주택형과 다른 사항을 숙지하여 계약에 임하시기 바라며, 청약 시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입주증 발급일)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본 아파트의 중도금은 사업주체에서 지정한 금융기관의 대출을 통해 납입 할 수 있습니다.[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대출부적격 사유로 인해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상기 납부 일정에 맞추어 직접 납부하여야 함(미납 시 연체료 부과됨)]
• 중도금 금융대출을 원하는 경우 수분양자가 계약체결 후 지정된 협약은행과 대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세부적인 대출신청일정 등은 별도 안내 예정)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IV　신청일정 및 장소, 구비서류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 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분양계약자("을")은 사업주체("갑")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갑")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상세내용은 보증회사인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로 문의 바랍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 분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사업주체	상 호	주식회사 더블유건설	주식회사 다림씨앤씨
	주 소	경기도 화성시 동탄순환대로 788, 509호(영천동)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삼성2로 259-14, 1층(고매동)
	등록번호	134811-0254194	110111-0177471
시공회사	상 호	주식회사 우남건설	주식회사 더블유건설
	주 소	경기도 화성시 동탄대로21길 10, 제2층(영천동, 더퍼스트타워)	경기도 화성시 동탄순환대로 788, 509호(영천동)
	등록번호	214911-0004756	134811-0254194

▣ **견본주택 사이버모델하우스 : buseong.firstvill.co.kr**
▣ **견본주택 위치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215-6 부성지구 우남퍼스트빌 견본주택 / 분양문의 1588-8034**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 및 공급회사로 문의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공사범위 및 마감재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588.8034

총 316세대 **84㎡A,B,C**

시행사 W건설 | Dalim ㈜다림C&C　시공사 Woonam 우남건설 | W건설

현장 오시는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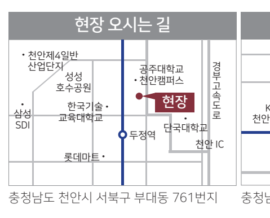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부대동 761번지

견본주택 오시는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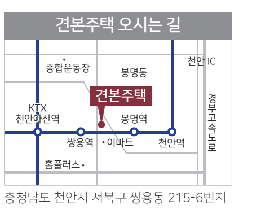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215-6번지